

## 부과·징수 등

## 제 16 조 부과·징수 등

(매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

## ◆ 매년 정기분 부과와 징수(12월 1일~12월 15일)

매년 6월 1일의 과세기준일 현재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내에 국고수납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당초 납세자 자진신고제도에서 2008년부터 세무서의 부과고지제도로 변경됨).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

-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2007. 1. 11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007. 1. 11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07. 1. 11 개정)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 11 개정)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 11 개정)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기재사항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발부하는 경우에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부과지가 아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 계산과정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 합산배제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부과와 징수 등】

-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2007. 8. 6 개정)

####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8. 6 개정)

#### 4. 삭 제 (2007. 8. 6)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 납부하여야 한다. (2007. 8. 6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 (2008. 4. 29 신설)
-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009. 5. 12 개정)
-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2009. 5. 12 개정)
-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2009. 5. 12 개정)

◆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추가자진납부 등 가능**

①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제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0. 12. 27 개정)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추가자진납부(국세기본법 제46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 제 17 조      결정과 경정

(결정·경정·추징·재경정 등)

 **무신고** : 결정, **과소신고** : 경정, **요건흡결** : 경정·재경정, **추징** 등

관할세무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 과세 대상의 누락·위법 또는 착오로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 다시 부과·징수하며, ㉡ 신고내용에 탈루·오류발견시 경정하며, ㉢ 결정·경정의 오류나 납세의무자의 경감요건 위배시 재경정 및 추징하며, ㉣ 재산세액의 세액변경·추징사유 해당시 경정·재경정 및 추징한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07. 1. 1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 11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010. 3. 31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008. 12. 26 신설)

#### 국토해양부의 과세자료 통보·실지조사·자료협조·의견조회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산세 자료를 통보받으며, 첨부서류와 현황 등에 의해 실지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료를 회신받거나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결정·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2008. 2. 29 개정)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008. 2. 29 개정)

### 합산배제임대주택 등의 요건위배시 차감세액 추정

- 합산배제임대주택 등의 가액을 합산한 총세액 - 임대주택 등의 과세제외조건 세액 = 추정세액임(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정함).
- 여기에 미달신고세액×20%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미납액×기간일수×하루당 0.03%의 가산세는 더해짐.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추징액 등】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액이 너무 많거나, 환급될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나 수정신고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정청구 요건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②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 ③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 ④ 다음의 사유발생(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최소계약해제권의 행사로 취소, 압수 등으로 계산불능사유의 소멸 등)

## 제 18 조 가 산 세

(국세의 가산세 조항은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삭제됨)

❖ 신고불성실시 : 세액×10%·20%·40%, 미납부시 : 하루당 0.03%의 가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불이행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합산제외했던 임대주택에 대해 추정사유 발생시 적법한 세액에 미달신고액이나 부족세액에 대해 ㉠ 신고불성실가산세 : 차이세액(부족세액)×20%(과소신고는 10%, 부당신고시는 40%)와 ㉡ 미달납부가산세 : 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일수×하루당 1만분의 3(하루당 0.0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10%  
• 미신고시 : 20%  
• 부당과소·초과환급·미신고시 : 40%

$$\text{㉡ 납부불성실가산세} = \frac{\text{미납세액}}{(\text{부족세액})} \times \frac{\text{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0,000} \times \frac{3}{10,000}$$

## 제 19 조 물 납

(1천만원 초과시 물납가능)

### ◆ 당해 부동산으로 물납허용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 초과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현금보유능력이나 현금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납세의무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물납 신청 · 허가 · 통지 · 수납일 지정 등

#### ① 신청기한

- 자진 신고 · 납부분 :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경정) 고지분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② 물납의 허가

- 물납허가여부통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 처리기간연장 :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안에서 처리기한 연장가능

#### ③ 물납허가 간주 : 통지기한까지 물납허가 여부가 서면으로 발송되지 아니한 때에는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봄(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외).

#### ④ 물납허가에 따른 가산세 등 적용배제 : 물납허가 여부가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아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물납재산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음.

⑤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 물납재산의 수납일 : 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함.

○ 물납재산의 수납일 재지정 : 1회 20일 범위내에서 수납일을 재지정

⑥ 물납허가의 효력상실 :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됨.

● **중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7. 8. 6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7. 27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허가를 허가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그 허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 【물납허가관련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영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통지 및 영 제14조(영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요구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 물납충당재산 : 당해 주택·토지의 공시가액

○ 물납충당재산 : 종합부동산세 과세해당 주택·토지

○ 물납충당 주택·토지의 수납가액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등임.

#### ❶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②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2008. 2. 29 개정)

#### ❖ 관리처분 부적당시 물납재산변경과 통보

물납허가 신청한 자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다른 재산으로 변경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통보일로부터 20일(국외에 주소를 둔 때는 3개월)내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허가여부를 통보한다.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4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몰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몰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몰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5조 【몰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중 몰납에 총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한내에 몰납재산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몰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은 자의 몰납재산변경신청에 대한 몰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 본문중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및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은 각각 “몰납재산변경신청일”로 본다. (2007. 8. 6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납허가일 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몰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몰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몰납대상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20 조 분 납

(납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 초과시 초과액 또는 50% 분납

○ 분납조건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분납일자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분납계산

- 납부할 세액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 : 5백만원 먼저 납부, 나머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 당해 세액×50%를 먼저 납부, 나머지 50%를 분납

● 종합부동산세법 제26조 【본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7. 8. 6 개정)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09. 2. 4 개정)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2007. 8. 6 신설)